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이수율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421호, 2023.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환자 권리의 이해와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으로 정하여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사회·한 의사회 및 간호사회 등의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16. ~ 9.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 내용

가. 환자 권리의 이해

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라.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선사회 및 간호사회
 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 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u></p> <p><u>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p> <p><u>1. 교육 내용</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환자 권리의 이해</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u></p> <p style="padding-left: 2em;"><u>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u></p> <p style="padding-left: 2em;"><u>라.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u></p> <p><u>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u></p> <p><u>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u></p>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선사회 및 간호사회

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06